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615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059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152,610원, 지방교육세 8,717,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8,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에서 제6쪽 제2행까지를 다음 2.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자체로는 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 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다른 각호의 규정과는 달리 자연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한연장 사유는 결국 대표이사와 같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그 조직형태와 운영방식 등을 살펴 위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C이 2015. 12. 1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6. 1. 8.부터 2016. 3. 24.까지 E의원에서 주상병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ullitus, 인슐린 분비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한 당뇨병을 의미한다(이와 달리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당뇨병을 의미한다)]', 부상병 '상세불명의 본태성(일차성) 고혈압[Other and unspecified primary hypertension, '본태성(일차성)'이라 함은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팔 신경 장애(Branchial plexus disorders)', '상세불명의 고지혈증(Hyperlipidemia, unspecified)',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Disorder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of thyroid, unspecified)',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Hypothyroidism, unspecified,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체내에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상세불명의 비타민 D 결핍(Vitamin D deficiency, unspecified)', '간 기능 이상(Abnormal results of liver function)' 등의 병명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C은 [redacted]병원에서 2016. 3. ~ 6., 8., 9., 그리고 2017. 2.에 매달 2회 내지 5회 정도 심장내과·내분비내과·류마티스내과·신경과·산부인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C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이상이 초래되었다거나 그 치료를 위한 입원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주로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 관하여 불변기간인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질병으로 위중'하였다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 제기에 앞서 거친 절차인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5

재판장 판사 조해현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